

부가가치세법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1) 주사업장총괄납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②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

이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 개설하면서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사업장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등록신청

2.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4.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를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제외)를 공급하는 것으로 영퍼센트 세율을 적용받은 재화를

5. 과세하지 않는 개인적공급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

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③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6. 선세금계산서 요건 추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 후 대가를 받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정한다.

- 1) 거래상대사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일)와 지급시기가 따로 적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
-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 되는 경우일 것

7.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감정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② 사업자가 실거래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건축물등의 가액이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8.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외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10.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제60조제2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1) 지연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 0.3퍼센트

2)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 0.5퍼센트

3) 경정기관의 확인

신용카드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공급가액× 0.5%

4) 지연수취 : 공급가액× 0.5%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

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5) 세금계산서 사전발급 : 공급가액 × 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6) 가산세우선순위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의 가산세(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우선

: 세금계산서미발급(2%,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기재불분명 0.5%)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1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26조제1항제7호).**

→다음은 면세하지 아니한다.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케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케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요금 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중 일정율**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제42조제1항).

※공제율

일반과세자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법인		$\frac{6}{106}$
	개인	과세기간 과세표준 2억초과	$\frac{8}{108}$
		과세기간 과세표준 2억이하 (2019.12.31.까지)	$\frac{9}{109}$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frac{4}{104}$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frac{4}{104}$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 및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frac{6}{106}$
위 외의 사업자			$\frac{2}{102}$

※ 일반적인 경우 :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일정율 × 공제율

* 일정율

구분	일정율		
법인	30% (2019년말까지 40%)		
개인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2억이하		50% (2019.12.31 55%)
	과세표준이 2억초과		40% (2019.12.31. 45%)
	음식점 (2019.12.31. 까지)	과세표준 1억이하	65%
		과세표준 1억초과 2억이하	60%
과세표준 2억초과		50%	
일정요건의 제조업자 (1역년)	법인	30% (2019년말까지 40%)	
	개인	과세표준 4억이하	50% (2019.12.31 55%)
		과세표준 4억초과	40% (2019.12.31. 45%)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함.(제113조제2항)

제조업		$\frac{6}{106}$
과세유흥장소		$\frac{4}{104}$
음식점업	과세표준4억초과	$\frac{8}{108}$
	과세표준4억이하 (2019.12.31.까지)	$\frac{9}{109}$

13. 부가가치세세액등의 특례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5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14.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제74조제4항 신설).

15.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외대상

다음의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임대업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17. 면세추가

1) 금융·보험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을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1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간 연장(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19.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분명 중 매입세액공제 추가 (시행령 제75조 제7호, 8호, 9호, 10호 신설)

-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②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3)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 추가(시행령 제88조제3항제3호 신설)

결제수단 간 과세형평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추가함.

개별소비세법

1. 보석 중 나석(裸石)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제1조제2항제2호가목).

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text{골프장 입장할 때의 인원} \times \frac{\text{실제이용한홀수}}{\text{전체홀수}}$
--

3.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 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골프선수 1)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골프선수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4.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제29조 신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주세법

1.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가격삭제

2.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몰취

관할 세무서장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 1)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 2) 1)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 3)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4.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주세 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 2)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면세한 주류,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 3)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